1 2012.12.31 제214章 Weekly

이슈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포커스

변액보험 펀드의 규모별 수익률과 시시점

금융보험 해설

퇴직연금의 이해 1: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국내금융 뉴스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소폭 증가 가계 재무건전성은 개선, 부채 보유 가구 수는 증가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국 주택시장, 2013년 회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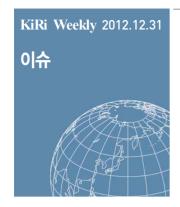
유럽 IMF.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정책합의 강조

일본 아베 정권, 일본경제 살리기에 전력

중국 내수확대를 위한 신형 도시화 정책

금융시장 주요지표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법제 마련 필요성: 재보험신용 리스크의 위험과 규제 공백

송윤아 연구위원 ·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retrocession spiral) 발생 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규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미흡한 실정임.
 - 2005~2011년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평균 출재율을 살펴보면, 화재 49.6%, 해상 71.6%, 특종 57.9%로,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최근 7개년 국내수재물량(생명보험 포함)의 70% 이상을 코리안리가 수재하는 등 특정 재보험회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이며,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코리안리의 재보험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3조 80억 원에 이름.
 -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고, 또한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전 문성과 재보험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자율규제기 능을 통한 재보험거래의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우리나라 재보험시장의 특징과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 측면의 접근방식, 그리고 미국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고 국제적 정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적시 통보를 통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둘째, 자율규제기능을 통해 재보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재보험 인정법 및 규제(CRMA·CRMR)와 같은 재보험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규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셋째,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되, 책임준비금 면제를 이용한 간접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 해외 소재 재보험회사를 관리해야 함.
 - 넷째.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 · 물적 감독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별·종목별·담보별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출재 한도 및 비상자본 산출 등 정량적 접근방법의 정교화와 재보험신용리스크 헤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1. 서론



- 최근 재보험산업의 높은 집중도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는 재보험의 상호연관성 및 재재보험 스파이럴(retrocession spiral)¹) 발생 가능성과 결합하여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 및 집중도가 높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의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미흡한 실정임.
 - 일반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원수보험료 기준 화재 0.5%(2,661억 원), 해상 1.5%(7,721억 원), 특종 7.1%(3조 7,120억 원)임.
- ➡ 우리나라와 같이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의존도 및 집중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 재보험신용리스크 통제를 위해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에 관한 요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된 미국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법제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방법은 리스크 헤지와 리스크 회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리스크 회피 방법 중에서 정성적 접근 방법에 집중하여 논의하기로 함.²)

¹⁾ 재재보험 스파이럴이란 소수의 재보험회사 간 반복적인 위험전가로 인해 재보험회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출재한 물건을 수재하는 상황을 이름.

²⁾ 자세한 내용은 송유아(2012), 「재보험신용리스크의 특징과 접근 방법」,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참조,

2. 왜 재보험신용리스크에 주목해야 하는가?



- 그동안 재보험회사의 파산 횟수 및 규모가 크지 않아 세계적으로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최근 재보험시장을 둘러싼 몇 가지 상황은 재보험신용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와 정책당국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음.
 - 재보험신용리스크란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적시에 지급할 수 없거나 (inability to pay) 출재사와 재보험회사 간 약관해석상의 불일치로 인해 재보험회사가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위험을 의미함(unwillingness to pay).
 - 1980~2011년 간 29개 재보험회사가 파산하였고 이로 이한 누적손실은 동기간 출재보험료의
 ○.43%인 18억 달러이며, 1969~2010년 간 미국 손해보험회사 파산의 3.7%가 재보험회사의 파산에 기인함.3)
-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재보험 활용도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소수 재보험회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 지고 있음.
 - 2010년 기준 출재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4.4%인 2,000억 달러이며, 2008년 기준 출재보험료는 원수보험료의 3.7%인 1,590억 달러임.⁴⁾
 - 2010년 손보는 원수보험료의 9%, 생보는 원수보험료의 2%를 각각 출재하였으며, 출재보험료의 12.5%는 재출재됨.
 - 1987년 상위 5개 재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31.8%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60%에 이르렀으며 이는 원보험시장 집중도의 2배 이상임.
 - 대형 자연재해 위험에의 노출, 활발한 진입 및 퇴출, 그리고 재보험회사의 적극적인 M&A 결과 세계 재보험시장 집중도가 높아짐.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높은 재보험시장 집중도는 시스템 리스크의 필요조건인 상호연관성● 증대시키고 대체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5)

³⁾ IAIS(2012. 7), "Reinsuance and Financial Stability".

⁴⁾ IAIS(2012), p. 9.

⁵⁾ IAIS(2012), p. 16 para 35.



〈그림 1〉세계 재보험시장의 집중도 변화(1987~2010)

주: Net Premium Written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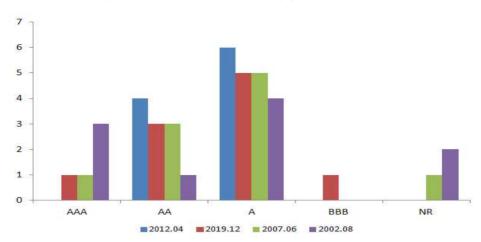
자료: Outreville, J. Francois(1998), "Size and Concentration Patterns of the World's Largest Reinsruance Companies",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3(86).

Outreville, J. Francois(2012), "The Worlds Reinsurance Groups: A Look at Names, Numbers, Countries and Performance", Working Paper No. 1/2012,

- 둘째,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 그리고 대형 인재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세를 보임.
 - 2002~2010년 간 S&P와 Moody's에서는 173회의 등급하향조정이 있었던 반면, 등급상향조정은 S&P의 경우 100회. Moody's의 경우 70회 있음.6)
 - IAIS(2012)에 따르면, 2002년에는 3개사가 AAA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2년에는 AAA 등 급의 재보험회사가 없음.
 -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향세는 신용등급 트리거 조항(rating trigger clause)⁷⁾과 결합하여 재 보험신용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음.
 - 신용등급 트리거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 면 출재사는 재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⁶⁾ Park, S. and Xie, X.(2011), "Reinsurance and Systemic Risk: The Impact of Reinsurer Downgrading on Property-Casualty Insurers", working paper, Seoul National University.

⁷⁾ 신용등급 트리거 조항이란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출재사가 재보험계약을 취소수 있음을 명시한 계약 조건임.



〈그림 2〉 상위 10개 재보험회사의 S&P 신용등급 변화 추이(2002~2012)

자료: IAIS(2012), p. 16.

- 셋째, 재보험산업의 상호연관성과 재재보험 스파이럴 발생가능성이 미미하다는 IAIS(2012)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재보험회사의 파산가능성과 출재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재보험회사의 지급불능이 시스템 리스 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들이 동의함.
 - 역사적으로 재보험회사 파산으로 인한 원수사의 지급불능 횟수와 손실규모가 작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8)
 - 다만 파생상품거래와 같은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지급불능은 타 금융산업 및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⁹⁾
 - 그러나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의 정도에 대한 의견은 상이함.
 - IAIS(2012)는 출재사와 수재사 간 수직적 거래관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산업 내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며 타 산업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반면 Cummins and Weiss(2010)는 재보험산업 내 위험의 전이와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재출 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Park and Xie(2011)은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원수사의 신용도 및 주가가 하락함을 보임으로써 보험부문과 재보험부문 간 상호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함. 10)

⁸⁾ Park and Xie(2011)은 상위 3개 재보험회사 중 하나가 재보험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원수사의 2%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원수사 중 1%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여줌. 또한 Group of Thirty(2006), Reinsurance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Group of Thirty는 세계 재보험시장의 20%가 파산을 경험하더라도 이는 원수보험료의 2~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원수사의 지급불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함.

⁹⁾ IAIS(2012).

- 또한 IAIS는 재재보험 스파이럴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한 반면, Cummins and Weiss(2010)는 이 것의 위험성을 경고함.
 - IAIS(2012)는 경쟁재보험회사 간 리스크 프로파일이 유사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물건을 수재함으로써 기대되는 다변화의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함.
 - 반면 Cummins and Weiss(2010)는 오늘날과 같이 재보험시장의 집중도와 상호연관성이 높은 경우 재재보험 스파이럴은 보험산업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2010년 기준 재보험회사는 출재보험료의 12.5%인 250억 달러를 재출재하였으며, 2008 년에는 출재보험료의 37.7%를 재출재함.

3. 국내 재보험거래의 특징 및 평가



가. 재보험거래 현황 및 특징

- 2005~2011년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평균 출재율을 살펴보면, 화재 49.6%, 해상 71.6%, 특
 종 57.9%로,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 활용도가 높은 편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재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비율은 2011년 기준 53%임
 - 2005~2011년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재보험 의존도 평균을 살펴보면, 화재 49.5%, 해상 56.9%, 특종 53.2%임.

¹⁰⁾ Cummins, J. David, and Mary A. Weiss(2010), "Systemic Risk and the US Insurance Sector", Working Paper, Temple University.

〈표 1〉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 재보험 활용도 및 의존도(2005~2011)

(단위: 억 원)

회계 연도	원수 보험료 A	수재 보험료 B	출재 보험료 C	출재율 C/(A+B)	원수 보험금 D	수재 보험금 E	출재 보험금 F	의존도 F/(D+E)
2005	28,766	356	17,654	60.6%	10,510	244	6,250	58.1%
2006	31,069	341	19,126	60.9%	12,222	193	6,940	55.9%
2007	32,510	440	19,777	60.0%	13,383	337	7,336	53.5%
2008	35,711	595	21,861	60.2%	19,004	393	11,244	58.0%
2009	39,144	815	23,889	59.8%	22,698	504	11,508	49.6%
2010	42,101	635	25,261	59.1%	23,074	536	12,521	53.0%
2011	42,237	635	25,326	59.1%	23,162	505	12,542	53.0%

주: 1) 외국사와 전업재보험회사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특히, 최근 7개년 국내수재물량(생명보험 포함)의 70% 이상을 코리안리가 수재하는 등 특정 재보험회사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코리안리는 수재위험의 일부를 재출재를 통해 지역별·종목별로 다변화함.
 - 코리안리는 2011년 기준 국내외로부터 5조 1,789억 원을 수재하였으며, 이중 1조 7,169억 원 (33.1%)을 국내외로 (재)출재함.
 - 2005~2011년간 코리안리의 평균 출재율은 32.5%(생명보험 포함)이고 화재, 해상, 특종 등 일 반손해보험의 출재율은 54.7%임.

〈표 2〉 수재사별 국내수재보험료(2005~2011)

(단위: 억 원)

회계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기율
코리안리	26,227 (82.9%)	27,203 (79.9%)	30,073 (79.7%)	31,613 (70.7%)	34,537 (71.7%)	37,238 (73.3%)	41,428 (74.1%)	7.9%
해외재보험회사 국내지점	3,587 (11.3%)	4,855 (14.3%)	5,696 (15.1%)	10,830 (24.2%)	11,369 (23.6%)	11,127 (21.9%)	11,248 (20.1%)	21.0%
원수손해보험회사	1,840 (5.8%)	1,992 (5.9%)	1,947 (5.2%)	2,288 (5.1%)	2,242 (4.7%)	2,433 (4.8%)	3,261 (5.8%)	10.0%
합계	31,655	34,050	37,716	44,731	48,148	50,799	55,937	10.0%

주: 괄호 안은 구성비임.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²⁾ 화재, 해상, 특종만을 포함함.

- ## 또한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코리안리의 재보험미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원수손해보험회사와 코리안리의 재보험 미수금은 2011년 기준 3조 80억 원에 이름.

〈표 3〉 2004~2011 국내 손해보험회사와 코리안리의 재보험 미수금 현황(2004~2011)

(단위: 십억 원)

회계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손해보험회사	495	517	543	627	762	943	988	1,245
코리안리	750	774	887	920	1,302	1,209	1,372	1,763
합계	1,245	1,291	1,430	1,546	2,064	2,152	2,360	3,008

주: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 한화, 롯데, 그린, 흥국, 삼성, 현대, LIG, 동부, AXA, 더케이, ERGO 다음, 하이카다이렉트, 서울보증을 포함함.

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련 규제

- 1997년 이후 재보험 자유화 정책 등으로 재보험거래를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보험신용리스 크 관련 규제로는 책임준비금 면제 요건,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권고,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를 두 있음.
- □ 구체적으로 보험업법시행령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한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을 면제함으로써 재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도록 유도함.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별도의 자산으로 표기하여야 함(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2항).
 - 적격재보험회사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이거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재보험회사를 의미함(보험업법시행령 제63조3항).
 - 즉, 거래상대방인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S&P BBB-, A.M.Best B+이면 책임준비금의 100%가 면제됨.
 - 부적격 재보험회사에 출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보험자 산을 감액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포털.

- 둘째,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재보험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권고함.
 - □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회사 경영진은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재보험운영전략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에 대해서 명확하고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지침, 재보험수재지침, 재보험회사의 선택과 평가기준, 재보험중개사 의 선택과 평가기준, 재보험정보관리, 재보험리스크관리
 - 또한 국내외 재보험거래현황, 재보험거래 익스포져 현황,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을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재보험 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출 시, 출재사가 직접 재보험거래 계약을 맺은 1차 재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0.8∼6.0%로 위험계수가 달리 적용됨.

다. 평가

- ₩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 활용도 · 의존도 · 집중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의 구체성 및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임.
 -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의 경우 권고사항에 불과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 또한 내부통제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재보험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 보험관리모범규준의 자율규제기능을 통한 재보험거래의 건전성 확보를 기대하기 곤란함.
- 또한 재보험 의존도가 높은 일반손해보험의 시장규모가 작아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관심과 자원배분이 부족함.
 - 전사적 차원의 재보험 전략 및 리스크 노출 정도를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통합위험관리조직 없이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재보험전략을 업무단위별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임.

¹¹⁾ 금융감독원(2012).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 또한 재보험감독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임.
- 특히, 재보험거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보고 및 공개 요건과 모니터링이 부족하여 재보험 신용리스크에 대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자원배분 부족은 RG보험중개 사기사건, 공동중개 사기사건, 재보험회사의 누적위험 초과인수 등 일련의 재보험관련 사고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음.
 - 원수보험료 중심의 외형성장경쟁에 치중하여 보유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위험을 인수한 후출재하는 영업 관행이 고착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법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자원배분이 절실히 요구됨.

4. 미국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



가. 미국 재보험규제 검토 배경

- 미국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도 및 의존도와 집중도가 높은 편으로 재보험신용리스크에 취약함.¹²⁾
 - 원수보험료의 약 80%가 출재되고 있으며 출재보험료의 70% 이상이 미국 소재 계열 재보험회사 (보험지주회사 내)에 출재된 것임.
 - 자본의 증가로 인해 재보험 의존도는 감소세를 보이나 2009년 기준 잉여금 대비 출재보험금은 131%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출재보험금의 약 70%가 미국 소재 계열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임.
 - 출재보험료와 출재보험금 기준 허핀달지수는 모두 0.6 이상으로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포트 폴리오 집중도가 높은 편이며, 이는 미국 소재 계열 재보험회사에 대한 출재에 기인함. 13)

¹²⁾ 상세는 Park and Xie(2011)를 참조 바람.

¹³⁾ 미국 법무부는 허핀달지수가 0.25 이상이면 집중도가 높은(highly concentrated) 산업으로 간주함. 상세는 http://www.justice.gov/atr/public/guidelines/hhi.html 참고 바람.

- 미국 소재 계열 재보험회사의 허핀달지수 평균은 0.9 이상으로 이는 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신용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¹⁴⁾

〈표 4〉미국 손해보험회사의 재보험 의존도 및 집중도(2002~2009)

(단위: 백만 달러. %)

회계 연도	출재보험료	순출재지급보험금	출재보험료 /원수보험료	순출재지급보험금 /surplus	출재보험료 기준 HIH 평균	출재지급보험금 기준 HIH 평균
2002	320,464	561,798	79.6	184.3	0.679	0.657
2003	349,209	610,754	78.7	167.1	0.670	0.653
2004	364,980	640,440	78.7	155.0	0.662	0.643
2005	388,210	729,528	81.5	151.7	0.650	0.635
2006	395,824	716,290	80.1	138.8	0.641	0.636
2007	402,798	717,355	81.1	129.4	0.637	0.639
2008	405,683	739,650	83.3	146.1	0.636	0.637
2009	400,790	735,134	84.7	131.3	0.636	0.639

자료: Park and Xie(2011).

이에 미국은 재보험신용리스크 통제를 위해 재보험회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에 관한 요건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련 규제15)

- 미국에서 일반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제는 회계제도를 이용한 출재사와 수재사의 동시규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미국 대부분의 주는 재보험 크레디트의 허용조건, 즉 수재사의 지급책임 이행능력에 관한 요건 과 절차사항을 입법화해서 시행하고 있음.
 - 미국보험감독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라 함)의 재보험인정모델법 · 규제(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 Regulation, 이하 각각 'CRMA' 와 'CRMR'이라 함)는 미국 대부분 주에서 원안대로 또는 원안에 수정을 가한 채 입법화됨.
 - 크레디트란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함으로써 출재사의 잉여금 압박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함.

¹⁴⁾ Cummins and Weiss(2010).

¹⁵⁾ 자세한 내용은 송윤아(2010), 「미국 재보험규제 변화와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참조.

- NAIC는 2011년 11월 CRMA와 CRMR 개정을 통해 미국 내 미등록 재보험회사에 대한 담보요건을 합리화하고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함.
 - CRMA와 CRMR은 1997년에 제정된 이래 그간 재보험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재보험금 회수를 확실히 할 수 있겠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수차례 개정되었음.
- - 미등록 재보험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적격국 (qualified jurisdiction) 소재 재보험회사, ② 최소 자본 및 잉여금 2억 5천만 달러 유지, ③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서 등급 유지, ④ 재보험회사에 취해진 규제조치를 10일 이내에 통보, ⑤ 감독규제목적의 재무정보 제출 동의(연간 분쟁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재보험금 리스트, 연차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제출)
 - '적격국'평가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재보험감독시스템의 실효성과 적절성, 미국 재보험 회사에 대한 차별 여부. 적절하고 신속한 미국 사법권 집행 가능 여부. 정보공유 및 협조 여부
 -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인가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다음에 근거하여 결정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영업관행, 신속지급에 대한 평판, 규제조치 이력,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재보험회사 소재국 청산 관련 법의 출재사 권리 보호 정도 등
 - 동일 재보험회사라 할지라도 신용등급 및 담보요건은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출재사 소재주 감독당국은 재보험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요건을 달리 적용함.
 - 1등급은 수재위험의 0%, 2등급은 수재위험의 10%, 3등급 수재위험의 20%, 4등급 수재위험의 50%, 5등급 수재위험의 75%, 취약등급은 수재위험의 100%
 - 출재사 소재 주정부는 재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기간에 따라 재보험회사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할수 있음.17)

¹⁶⁾ CRMR Section 8. 개정전에는 해외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수재위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를 설정하여야만 동 거래를 재보험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담보요건이 해외재보험회사의 미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자원 배분상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상세는 다음을 참조 바람: 송윤아(2010), 「주요국 재보험감독기준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¹⁷⁾ CRMR Section 8 B(5).

- 15% 이상의 고객사에 90일 이상 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사당 미수금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90일 이상 지급 지연된 재보험금이 5천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주정부는 해당 재보험회사의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18)
- 이로써 출재사는 재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재보험회사에 출재할 유인을 가지고, 감독당국
 은 문제의 재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현재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인디애나가 위험기준 담보요건을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에서 채택을 논의 중임

둘째. 보험회사는 특정 재보험회사에 대한 재보험 의존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주정부에 통보해야 함.¹9)

- 전년도에 출재사의 총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회사 또는 재보험그룹에 출재했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주정부에 통보해야 함.
- 또한 특정 재보험회사 또는 재보험그룹으로부터 재보험환급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 셋째, 출재사가 재무제표 상 재보험 크레디트를 받으려면 지급불능약관(insolvency clause)과 중개자약관(intermediary clause)을 재보험특약서상에 포함해야 함.
 - ◎ 지급불능약관은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경우라도 재보험회사는 청산 등에게 재보험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임.²⁰⁾
 - 1990년대에 보험회사의 파산이 늘어나자,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많은 주에서 지급불능약관 조항을 보험법에 신설하거나 이를 강화함.
 - 기존 CRMR에서는 지급불능약관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개정 CRMR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21)

¹⁸⁾ 분쟁 건인 경우 제외함.

¹⁹⁾ CRMA Section 2 J(Concentration Risk).

²⁰⁾ 지급불능약관의 제정배경은 다음과 같음. 1932년 Southern 보험회사가 파신하자 뉴욕주 보험감독청장인 Lewis H. Pink는 동사의 청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보험회사에게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그러나 재보험회사는 재보험특약서상에 원보험자의 실제손해가 없으면 재보험회사의 보상이 없다는 실손보상원칙을 들어 지급을 거절함. 즉 출재사의 원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재사의 재보험금 지급도 없다는 논리인데 문제는 출재사가 지급불능에 빠져 원보험금 지급이 없는 경우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게 되고 재보험금 회수가 불가하니 원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모순에 빠지게 됨. 결국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미 대법원은 원고패소로 판결함. 결국 뉴욕주는 Fidelity & Deposit Co. of Md. v. Pink, 302 U.S. 224 사건을 계기로 지급불능약관을 재보험 크레디트 부여의 필요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보험법에 신설함(N.Y. Ins. Law 1308).

²¹⁾ CRMR Section14 A: ... Includes a proper insolvency clause, which stipulates that reinsurance is payable,

- 중개자약관은 재보험계약에 따라 출재사 또는 재보험회사가 보험중개사에 보험료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동 중개사로의 지급에 대해 재보험회사가 모든 신용리스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임. ²²⁾
 - 기존 CRMA에서 지급불능약관이 강제사항이었던 반면 중개자약관은 권유사항이었으며 기존 CRMR에서는 중개자약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음.²³⁾

5.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 손해보험은 재보험에 대한 활용도 · 의존도 ·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하나, 재보험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위한 법제와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의 자원배분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표 5〉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책임 준비금 면제 요건	거래상 대상 조건	• 수재사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이 거나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해야 함	로 구세위점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남모들 설정해 이 하			
	계약 조건	• 없음	• 지급불능약관과 중개자약관 삽입			
정보 공개 및 보고 요건	집중도	•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을 통한 권고	• 전년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특정 재보험회 사에 출재하거나 특정 재보험회사로부터 재보험 환급이 전년도 계약자잉여금의 50%를 초과한 경 우 주정부에 통보 의무화			
	거래 내용	• 재보험거래 모범규준을 통한 권고 • 구체성과 강제성 부족	재보험 관련 NAIC 모델법을 토대로 각 주에서 입법화함 구체적이고 강제적임			

주: 표 내용은 NAIC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and Regulation 개정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며,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의 일부임.

directly to the liquidator or successor without diminution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ceding company, pursuant to Section [insert appropriate number] of the Insurance Code.

²²⁾ CRMR Section 14 C: includes a proper reinsurance intermediary clause, if applicable, which stipulates that the credit risk for the intermediary is carried by the assuming insurer.

²³⁾ CRMA Section 5.

- 무엇보다도, 미수금, 집중도, 리스크 출처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적시 통보를 통한 재보험신용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 둘째, 자율규제기능을 통해 재보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재보험 인정법 및 규제(CRMA·CRMR)와 같은 재보험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규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 책임준비금 면제조건을 이용한 출재사에 대한 직접규제는 수재사에 간접규제로 작용함.
 - 예를 들어, 책임준비금이 100% 면제되는 재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지급불능약관 또는 중개사약과을 책임준비금 면제요건으로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넷째, 재보험신용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감독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별·종목별·담보별 재보험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출재 한도 및 비상자본 산출 등 정량적 접근방법의 정교화와 재보험신용리스크 헤지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kiqi